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3052호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6. . .<br>(제 회)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 |
|------|--|

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 
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고성군수  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6. 1. 9. |

#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3052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6. 1. 9.  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(2021. 5. 1. ~ 2026. 4. 30)만료일  
도래 및 시설부지 확장에 따라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고성군 건설기계  
공영주기장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위탁근거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2(공영주기장의 설치)
- 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 등),  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
| 시설명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일      | 시설규모(m <sup>2</sup> ) |        |      | 비<br>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건축면적                  | 주기면적   | 주기면수 |        |
| 고성군<br>건설기계<br>공영주기장 | 고성군 고성읍<br>무량리 127-3, 125-1 | 2021. 3. | 100.55                | 10,500 | 100  |        |

- 나.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6. 5. 1. ~ 2031. 4. 30.(5년)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
- 위탁범위
  -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(부속시설)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 -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  -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사항

#### 4. 기대효과

대형기기인 건설기계를 외곽 공영주기장으로 분산 주기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

#### 5. 향후 추진계획

- 가. 2026. 2: 수탁자 공개모집
- 나. 2026. 3: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·선정
- 다. 2026. 4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라. 2026. 5: 민간위탁 실시

- 붙임 1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.  
2.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 1부.  
3. 관련 법령 1부. 끝.

□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

| 연번 | 검토 항목                 | 검토결과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 |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 | ○ 공영주기장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<br>○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을 통한 사무 수행으로 전문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|
| 2  |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  | ○ 민간위탁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<br>○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을 통하여 불법 주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효과에 따른 공공성 확보    |
| 3  | 경제적 효율성               | ○ 직영 운영 시 추가 (전문)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한 정원 증원 및 예산 확보 등의 행정 부담 가중  |
| 4  |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| ○ 전문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자가 운영 시 관련 전문 지식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 대응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         | ○ 이용객 수, 수선유지비 등 운영 전반을 통계자료화 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 방향 설정에 용이   |
| 6  |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       | ○ 민간위탁관리 위·수탁 협약서에 따른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 확보  |
| 7  |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     | ○ 설치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주기장 시설 특성상 신규 설치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운영이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검토의견

-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며, 민간위탁 시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,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**붙임 2****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**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건설과-536     |
| 등록일자 | 2026. 1. 7. |
| 결재일자 | 2026. 1. 7. |
| 공개구분 | 대국민 공개      |

|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주무관 | 건설행정담당 | 건설과장 | 산업건설국장 | 부군수 | 군수 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| 2026. 1. 7. |
| 박성언 | 심지은    | 김성영  | 이상한    | 류해석 | 이상근         |
| 협조자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|
|     | 주무관    | 황지혜  | 인사담당   | 박남숙 |             |

 고성읍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

##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### 개 요

- (위탁대상)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
- (위 치)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-3, 125-1번지
- (면 적) 11,722㎡(주기면수: 100대)
- (위탁기간)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
- (수탁자 심사 및 선정) 민간위탁심의위원회
- (추진방법 및 절차) 공개모집
  -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→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
  -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



**고 성 군**  
**(건 설 과)**

#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-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만료(2026. 4. 30.)일 도래 및 시설 부지 확장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## I 관련근거

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 2(공영주차장의 설치)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 등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## II 시설개요

- 시설명: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
- 위치: 고성군 무량리 127-3 외 1필지
- 면적: 11,722㎡(주차면수: 100대)
- 부대시설
  - 사무실 1동(100.55㎡), CCTV 2대, 가로등 10본
- 시설현황

| 구분 | 소재지     | 지번    | 규모(㎡)  |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|
|    |         |       | 면적     | 주차면수 |    |
| 계  | 2필지     |       | 11,722 | 100  |    |
| 당초 | 고성읍 무량리 | 127-3 | 6,422  | 60   |    |
| 추가 |         | 125-1 | 5,050  | 40   |    |

- 위치도 및 항공사진



## II

## 위탁개요

### ○ 위탁 대상

| 시설명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| 토지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    |        | 건축면적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총면적                   | 제외면적           | 위탁면적   |        |    |
|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|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-3 외1필지 | 11,722                | 1,222<br>(①+②) | 10,500 | 100.55 |    |

※ 제외면적: ①(622m<sup>2</sup>)+②(350m<sup>2</sup>)=1,222m<sup>2</sup>[도로보수원 창고 진출입로 사용 제외]



- 위탁 기간: 5년(2026. 5. 1. ~ 2031. 4. 30.)
- 위탁사무의 범위: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및 관리 전반
- 수탁자: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(공개모집)
- 위탁사용료: 연간 9,440,850원 정도(매년 변경)
  - 토지: 공시지가(33,400원) × 면적(10,500m<sup>2</sup>) = 350,700,000원
  - 건물: 시가표준(268,000원) × 연면적(100.55m<sup>2</sup>) = 26,934,000원
- ※ 산출근거: (토지가액 + 건물가액) × 25/1,000 = 9,440,850원

### <現 위탁업체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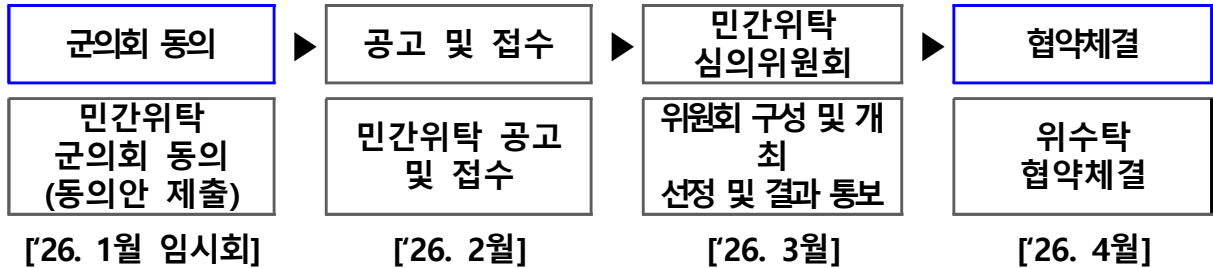
| 시설명            | 위탁운영체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위탁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| 소재지               | 회원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| (사)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<br>경남고성지회 | 제영래 |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-3 | 109명 | 2021. 5. 1.<br>~<br>2026. 4. 30. |

### Ⅲ

## 모집 및 선정계획

### □ 모집 개요

#### ○ 추진일정(안)



#### ○ 공고기간: 2026. 2. 2. ~ 2. 8.(7일간)

※ 재공고시 재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 2. 9. ~ 2. 15.

#### ○ 공고방법: 군 홈페이지 게재 등

#### ○ 접수기간: 2026. 2. 9. ~ 2. 15.(7일간)

#### ○ 신청자격: 고성 군내에 사무실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

### □ 심사 및 선정: 2026. 3월(예정)

#### ○ 선정심사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※ 별도 계획 수립

- 심사방법: 정량평가 + 정성평가 병행

#### ○ 심사항목

| 구분    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        | 평가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량적<br>평가<br>(20점) | 운영관리능력(10점)        | ▲단체 또는 사업자 규모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▲주기장 운영 실적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재무상태(10점)          | ▲재무재표 또는 신청단체(사업자) 예금 자본 평가 | 10  |
| 정성적<br>평가<br>(80점) | 운영 이해도(10점)        | ▲위탁배경, 목적 등에 대한 이해도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▲신청자의 운영추진 방향의 적합성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운영시설관리(20점)        | ▲인력배치 계획의 적합성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▲시설물 안전 및 사고 대처 방안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▲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| 운영활성화(40점)         | ▲주기장 운영계획                   | 20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▲주기장 이용홍보 계획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| ▲운영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운영계획종합판단(10점)      | ▲운영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총 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○ 수탁자 결정방법

-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심사 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
-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‘운영활성화’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결정

□ **결과 통지 및 위탁계약:** 2026. 4월

- 선정결과 통보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
- 위탁계약 체결
  - 주요 내용: 위탁 목적, 위탁기간, 위탁사업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,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, 계약의 해지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

**IV**

**행정사항**

- 2026. 1.: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
- 2026. 2.: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6. 3.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
- 2026. 4.: 위·수탁 협약체결

**□ 건설기계관리법**

**제33조의2(공영주기장의 설치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(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**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**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**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**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8.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

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, 검침, 주차시설,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 이라 한다)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4. 민간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개정 2022.12.27. 조2767>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(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,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,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)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신설 2022.12.27. 조2767>